용인 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조합원 취소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788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20.)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02.(금)	2026.11.13.(금)	2026.11.18.(수)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1.26.(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3.(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9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0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8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18.(수)	2026.11.23.(월)	2026.11.24.(화)~2026.11.25.(수)	2026.11.26.(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6-1번지 ☎ 1544-7885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20.)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리 산105-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9개동 총 1,265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48세대의 잔여 19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99	01	059.9671A	59A	12	201	604, 1605, 1705, 2004
					203	702, 1005, 1205, 2202, 2304
					204	602, 905, 1002
	02	074.9936A	74A	3	202	402, 1202
					207	2502
	03	084.9999A	84A	3	202	403
					205	1503
					207	2703
	04	084.9989B	84B	1	207	1804
	합 계			**19**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 금(35%)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입주일 중 선 도래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1회 (10%) 2027.01.15.	2회 (10%) 2027.01.15.	3회 (10%) 2027.05.15.	4회 (10%) 2029.03.15.	5회 (10%) 2029.07.15.	6회 (10%) 2029.11.15.	
59A	201동 4, 5호	6~7층	2	53,463,965	381,536,035	435,000,000	10,000,000	11,75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52,250,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 금(35%)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입주일 중 선 도래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1회 (10%) 2027.01.15.	2회 (10%) 2027.01.15.	3회 (10%) 2027.05.15.	4회 (10%) 2029.03.15.	5회 (10%) 2029.07.15.	6회 (10%) 2029.11.15.	
	203동 2호	15~19층	2	53,463,965	388,536,035	442,000,000	10,000,000	12,1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54,700,000
		20~24층	2	53,463,965	391,536,035	445,000,000	10,000,000	12,25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55,750,000
	203동 4, 5호 204동 2, 5호	6~7층	2	53,463,965	376,536,035	430,000,000	10,000,000	11,5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50,500,000
		10~14층	3	53,463,965	380,536,035	434,000,000	10,000,000	11,7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51,900,000
		20~24층	1	53,463,965	386,536,035	440,000,000	10,000,000	12,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54,000,000
74A	202동 2호 207동 2호	3~4층	1	66,603,209	445,396,791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0~14층	1	66,603,209	455,396,791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25~29층	1	66,603,209	465,396,791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84A	202동 3호 205동 3호 207동 3호	3~4층	1	75,304,071	481,695,929	557,000,000	10,000,000	17,85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94,950,000
		15~19층	1	75,304,071	496,695,929	572,000,000	10,000,000	18,6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200,200,000
		25~29층	1	75,304,071	503,695,929	579,000,000	10,000,000	18,9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02,650,000
84B	207동 4호	15~19층	1	75,309,285	477,690,715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 상기 공급금액(분양대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3.(월) ~ 2026.12.02.(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2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11.24.(화) ~ 2026.11.25.(수) 10:00 ~ 16:00	• 용인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6-1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당첨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제출 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무주택 서약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O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제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무순위(사후)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기준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출생일부터 무순위(사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무순위(사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3.) 기준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제출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

※ 사업주체는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11.26.(목) 10:00 ~ 16:00	용인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6-1번지)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수위 등 적격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제출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2차), 중도금, 잔금	BNK 경남은행	207-0219-9247-04	㈜무궁화신탁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동시 계약을 진행 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 : 2026.10.02.(금), 주택관리번호 202600038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양지지구2블럭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주)무궁화신탁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66, 202호(대승빌딩)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3층 304호 (망월동, 메디피아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사업자등록번호	612-82-82567	220-81-19330	120-86-58362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tarhills-yg.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6-1번지

■ **분양 문의 :** 1544-788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